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0호 2022. 10. 25.(화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58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1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두곡) . . . 22
- 하동군 고시 제2022-17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두양) . . . 26
- 하동군 고시 제2022-179호 하천 점용 허가고시(지례천) 29
- 하동군 고시 제2022-18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0
- 하동군 고시 제2022-18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32
- 하동군 고시 제2022-187호 사방지 지정 고시 33
- 하동군 고시 제2022-188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 38
- 하동군 고시 제2022-189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지 41
- 하동군 고시 제2022-19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50
- 하동군 고시 제2022-19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51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256호 하동군차량규정을위한하동군장애인생활시설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3
- 하동군 공고 제2022-1274호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61
- 하동군 공고 제2022-1278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79
- 하동군 공고 제2022-1283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84
- 하동군 공고 제2022-129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88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180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99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공고 제2022-20호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100
- 하동군 공고 제2022-1224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110
- 하동군 공고 제2022-1267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111
- 하동군 공고 제2022-1275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14
- 하동군 공고 제2022-1334호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132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58 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을 “군수가”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타인이”를 “타인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관행”을 “거래관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가증권, 부동산”을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5조 앞에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삽입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 서면”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2.“직무관련 공무원” 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라. 그 밖에 <u>중앙행정기관의 장</u> 등이 정하는 공무원</p>	<p>제2조(정의) 2. (현행과 같음)</p> <p>라.-----<u>군수가</u> -----</p>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공무원이 <u>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2. <u>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삭 제></p>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
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
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
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
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
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
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
상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
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
상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장 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삭 제>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

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삭 제>

<삭 제>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

<삭 제>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
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
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
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
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직
무관련자인 퇴직자의 사적 접촉
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
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
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
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
하여야 한다. 단, 사전신고가 곤란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략)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② (생략)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 9. (생략)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 타인으로 하여금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거래관행 -----

6. ~ 9. (현행과 같음)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관사·건설기계·영농기기·실험(시험·측정) 기기·잠수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 (생 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전가
(----- 轉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단체에 공무원
원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 제4호 각 목의

단 체

<신 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횡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삭 제>

④ -----

----- 그 공무원의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신 설>

외부강의등은 그 횡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전거래, 부동산 대여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동군 고시 제2022 - 1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두곡)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지정현황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두곡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599번지 일원	취약방재시설지구	나	24,994	집중 호우 시 고동골천의 하폭 및 제방고 부족, 교량 연장 및 경간장 부족 등으로 인한 하천 월류로 주거지와 농경지에 침수피해 발생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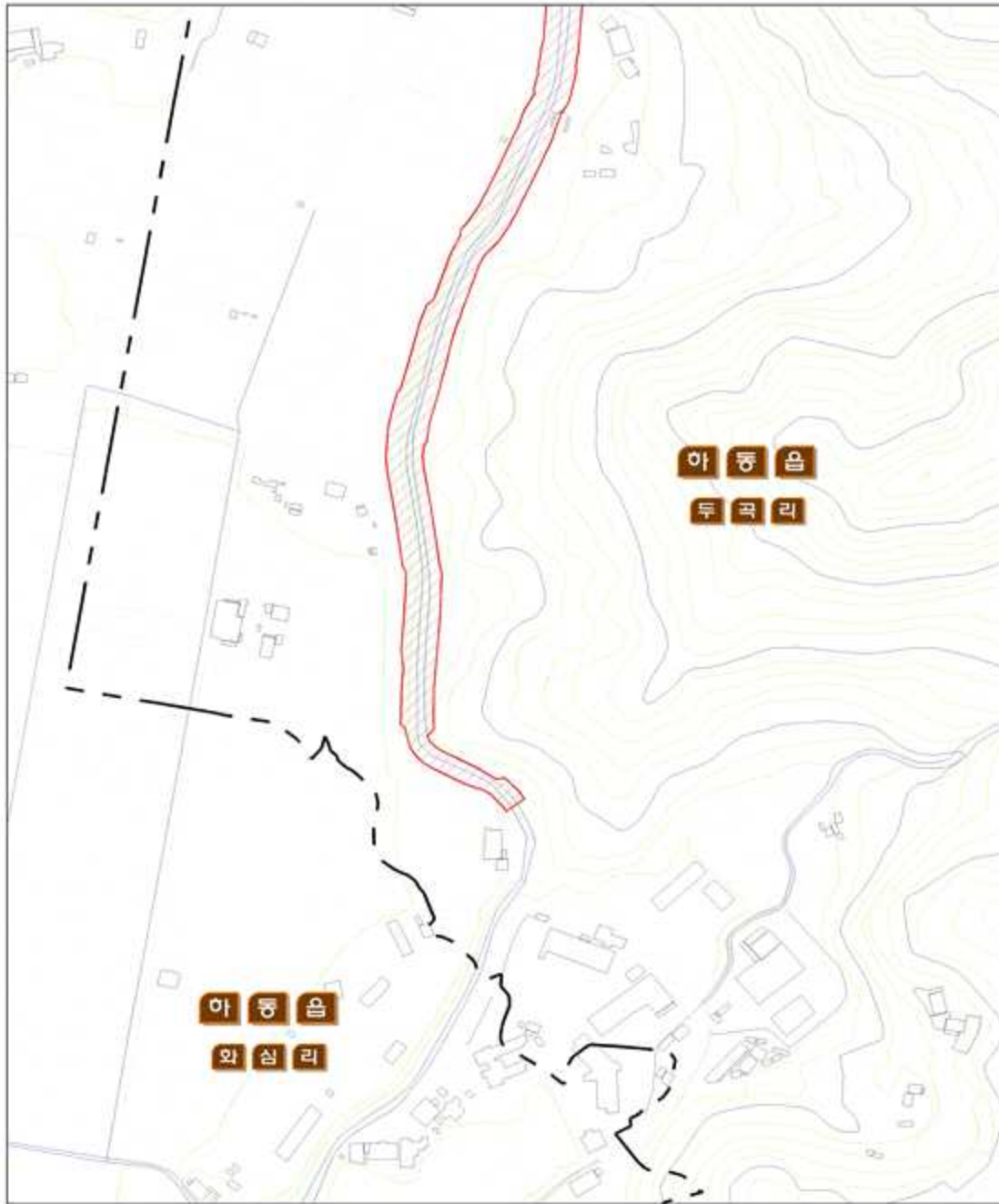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두곡지구).

2022. 9. 7.

하 동 군 수

[붙임1] 지형도면(안)

두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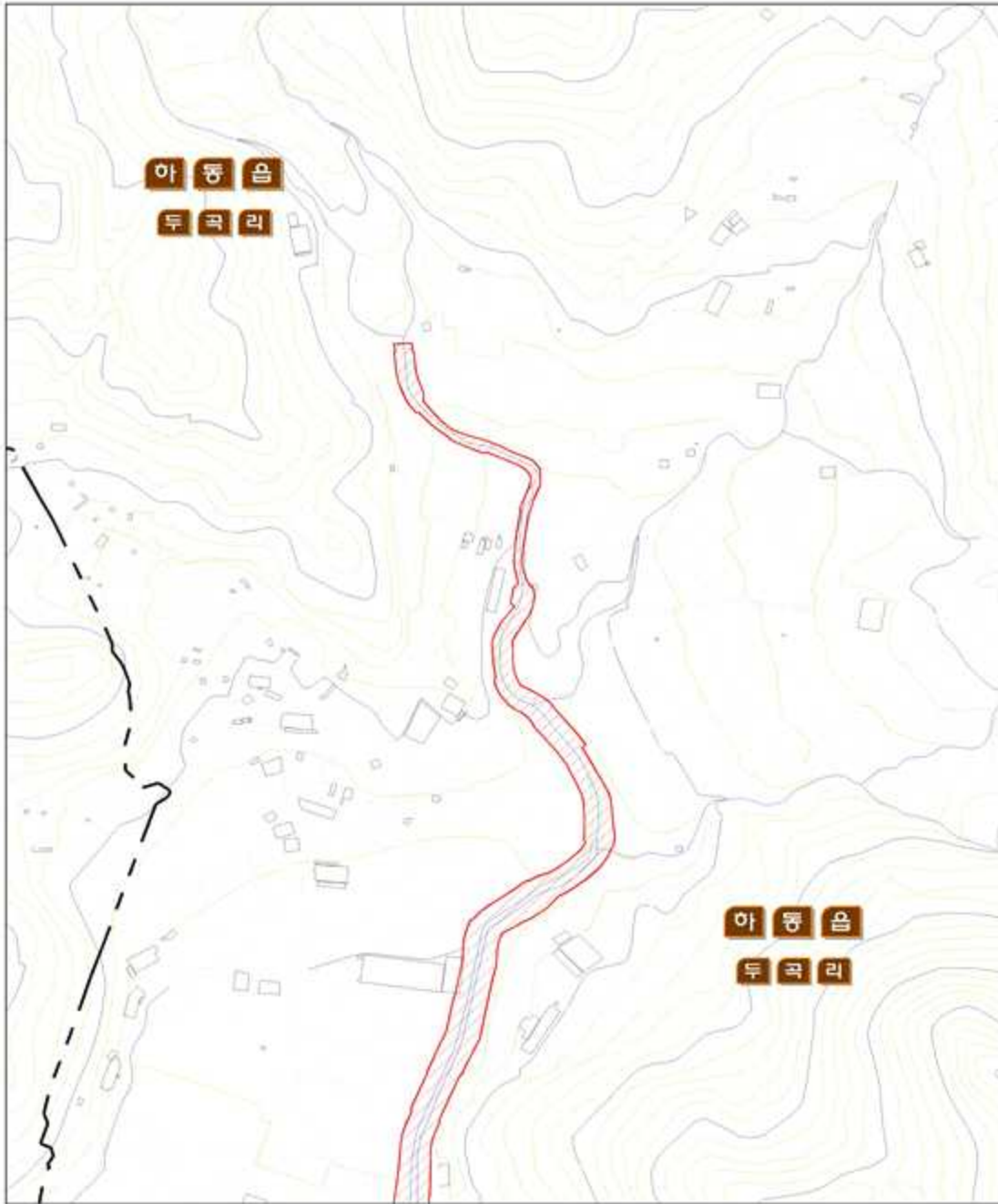


구분	입안 도 설계원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3차 확인자
소속	(주)한울엔지니어링	하동군 건설교통과		
직위	-	주무관	담당주사	건설교통과장
직명	사업대입기술자	지형시설주사	지형시설주사	지형시설사무관
성명	-	-	-	-
확인인	-	-	-	-

· 지정권자 : 하동군수
 · 지정일자 : 2021년 12월 일
 · 고시년도 : 2021년 12월 일
 · 고시번호 : 하동군고시 제 2021 - 호
 · 작성자 : (주) 한울엔지니어링
 · 작성년월일 : 2021년 12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색인도
 1
 2

두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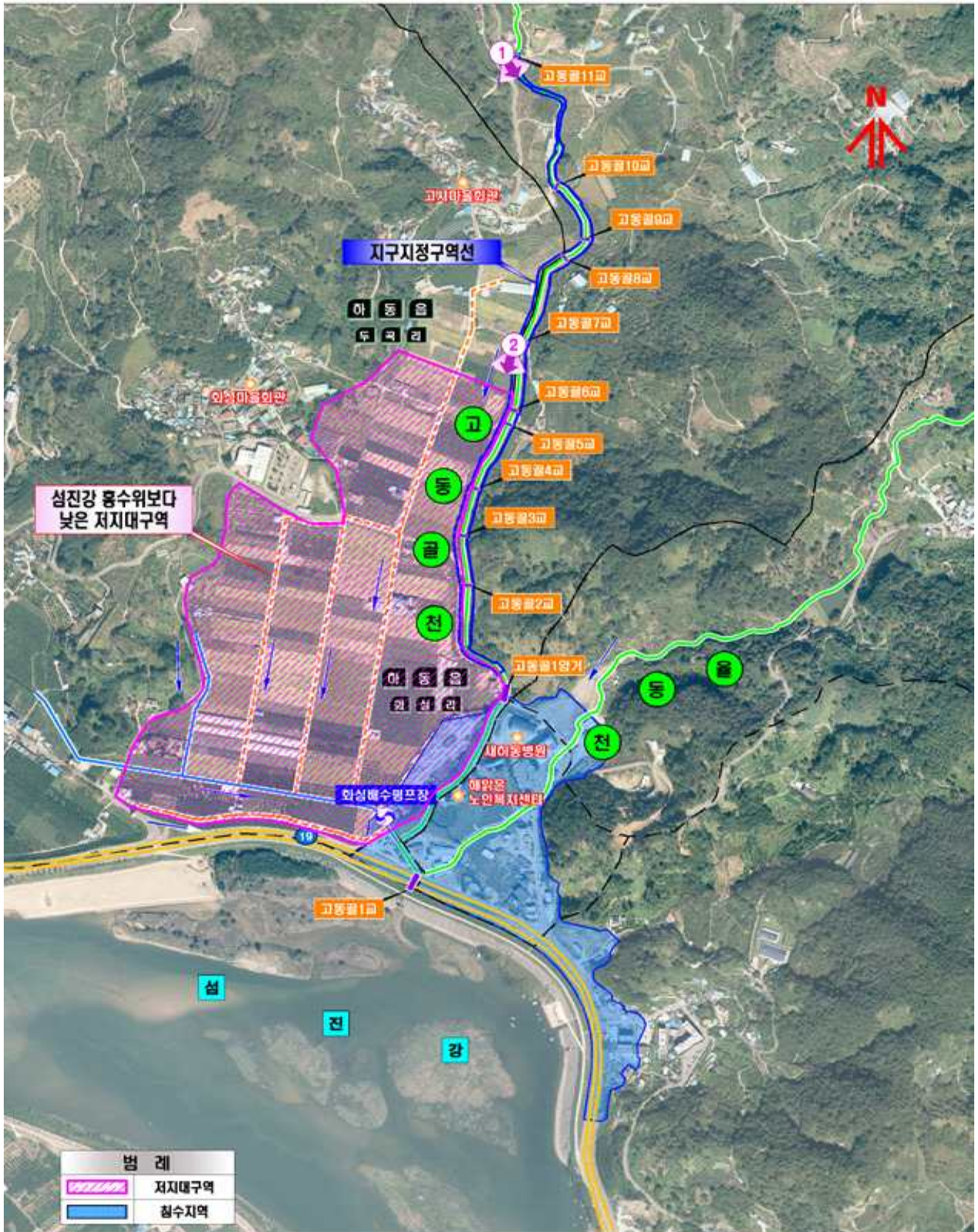


구 분	입안 및 집행역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3차 확인자
소 속	(주)한울엔지니어링	하동군 건설교통과		
직 위	-	주무관	담당주사	건설교통과장
직 명	사업책임기술자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	-	-	-
특 언	-	-	-	-

- 지정권자 : 하동군수
- 지정일자 : 2021년 12월 일
- 고시년도 : 2021년 12월 일
- 고시번호 : 하동군고시 제 2021 - 호
- 작 성 자 : (주) 한울엔지니어링
- 작성년월일 : 2021년 12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색인도
1
2

위성사진



하동군 고시 제2022 - 17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두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지정현황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두양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05-1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나	67,000	두양천(지방하천), 산태골천(소하천) 개수사업 미시행으로 호우발생 시 본류인 덕천강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 월류로 주거지와 농경지에 침수피해 발생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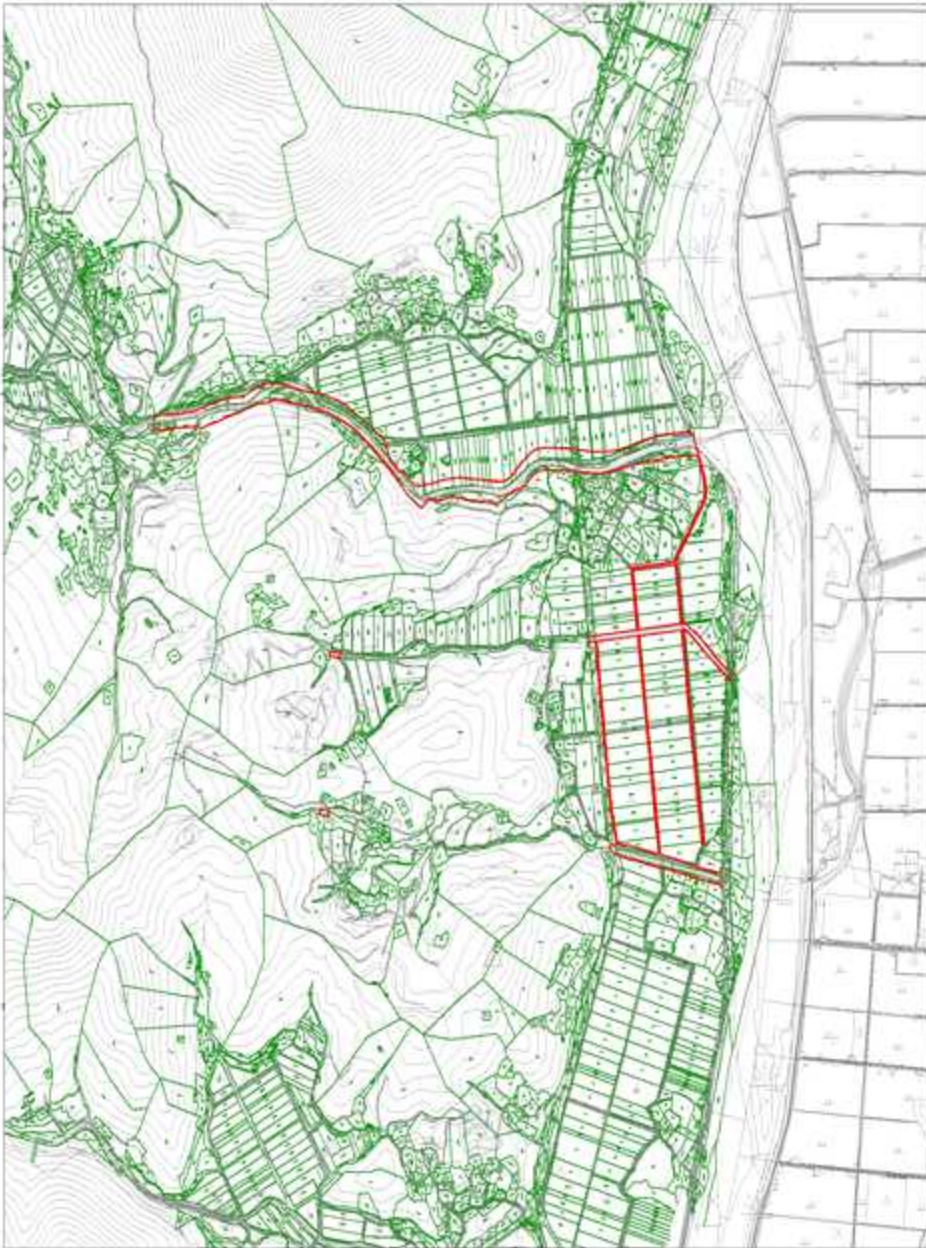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두양지구).

2022. 9. 7.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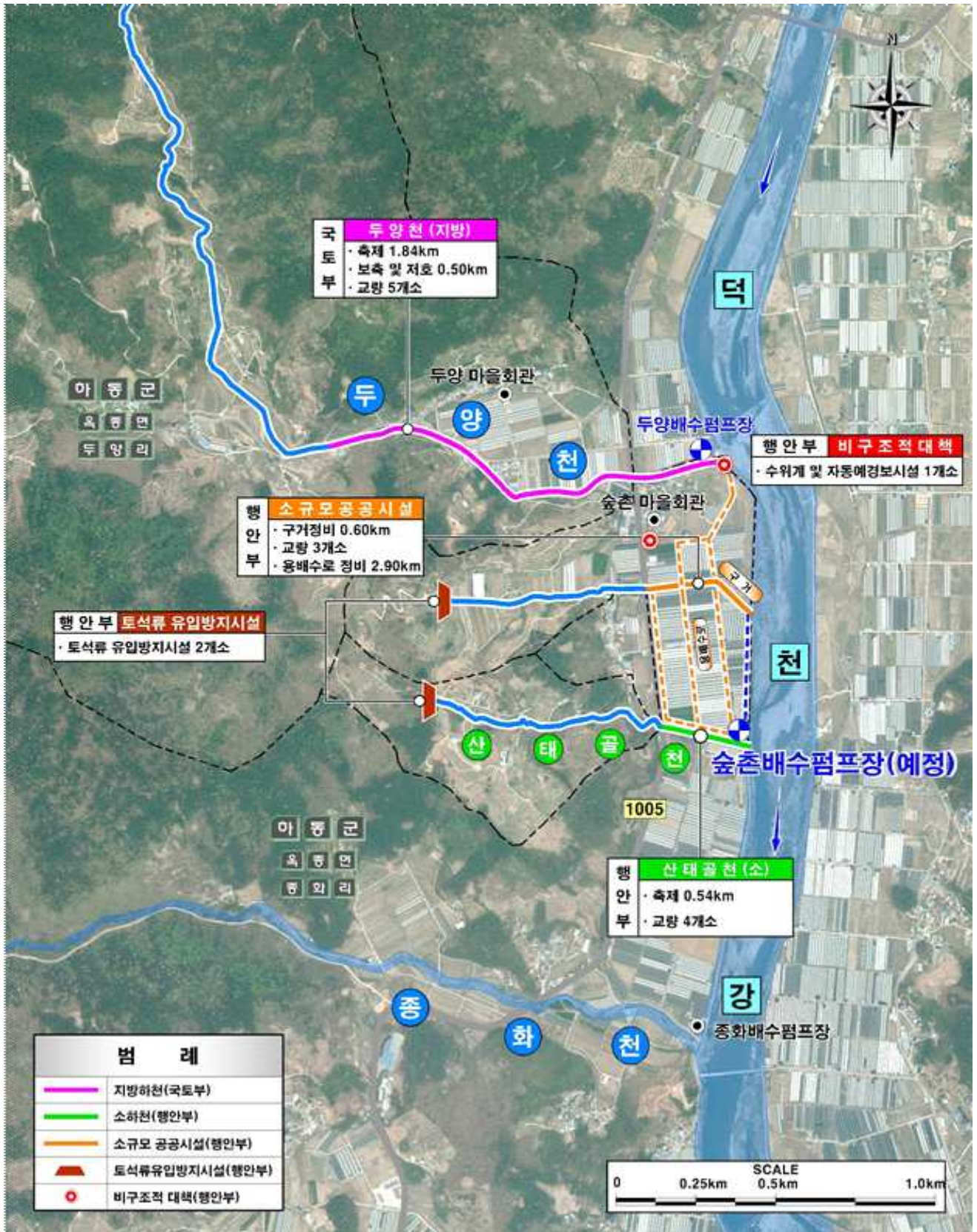
[붙임1] 지형도면(안)

두양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 금회 지형도면고시안은 적색으로 표시된 산임

위성사진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79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9. 13.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2-56,57호
2. 하천의 명칭 : 지례천
2. 허가연월일 : 2022.09.13.
3. 점용자 :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9번지, 금오농협
4. 점용의 목적 : 육묘장 조성
5. 점용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42-1, 642-8번지
6. 점용면적 : 749㎡
7. 점용허가 기간 : 2022.09.13.~2027.09.12.

하동군 고시 제2022 - 18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점길 20-67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828-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점길 20-67		20220915	20070618	동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18-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38-4		20220915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애치리 540-6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숙재1길 131		20220915	20090302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61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27-29		20220915	20090302	동산골이라는 옛지명 반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2-18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9. 2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58호
2. 허가연월일 : 2022. 9. 27.
3. 점·사용의 목적 : 홍수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계류의 침식이나 범람 등 수해·재해 방지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317번지, 269㎡
(인접:궁항리 1246번지)
5. 점·사용의 기간 :영구(사방시설물 설치)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

하동군 고시 제 2022 - 187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 9. 29.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2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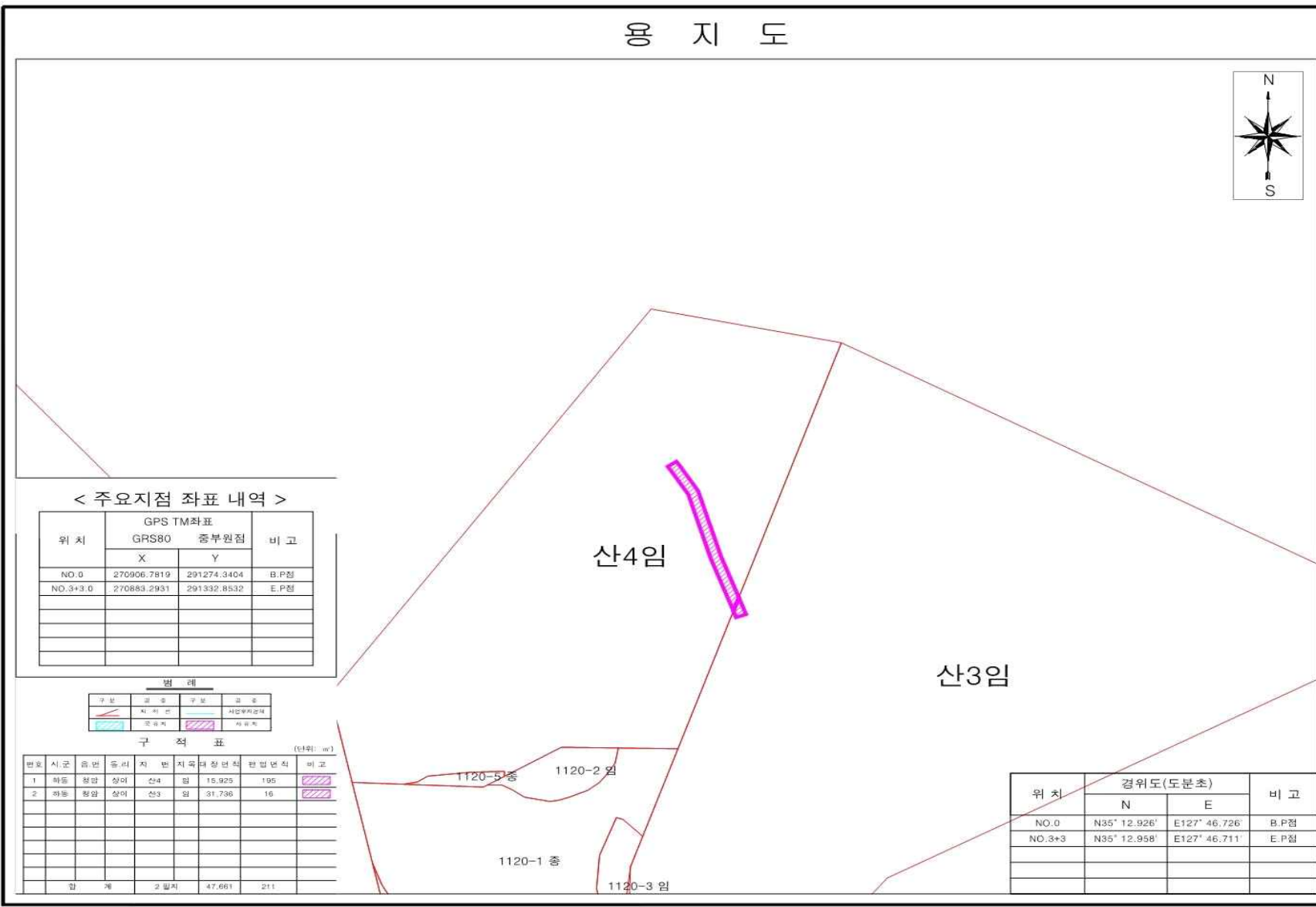
사방지 지정 조서
(2022년 하반기(추가)계류보전사업-하동청암상이지구)

토 지 소 유 자	성 명	김충현 외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59 901호(화정동, 화정대우마이빌)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산4번지 외			
조 사 년 월 일	2022년	09월	일	
사 업 계 획 승 인 년 월 일	2022년	09월	일	
사 방 지 지 정 면 적	539	m ²		
사 방 지 지 정 사 유	2022년도 추가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 사 자 직 급 : 지방시설서기

성 명 : 박 성 규 (인)

○ 용지도(1공구)



ORDER
발주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PROJECT TITLE
공사명
2022년 계류보전사업
[하동창암상가지구]

DRAWING TITLE
도면명
용 지 도

DATE
일 자
2022. 08.

DESIGNED BY
설 계 자
신원건축기술개발(주)
윤 승 현 인

CHECKED BY
심 사
CHECKED BY

APPROVED BY
승 인

DRAWING BY
제 도

SCALE
축 적
A1 : 1/200
A3 :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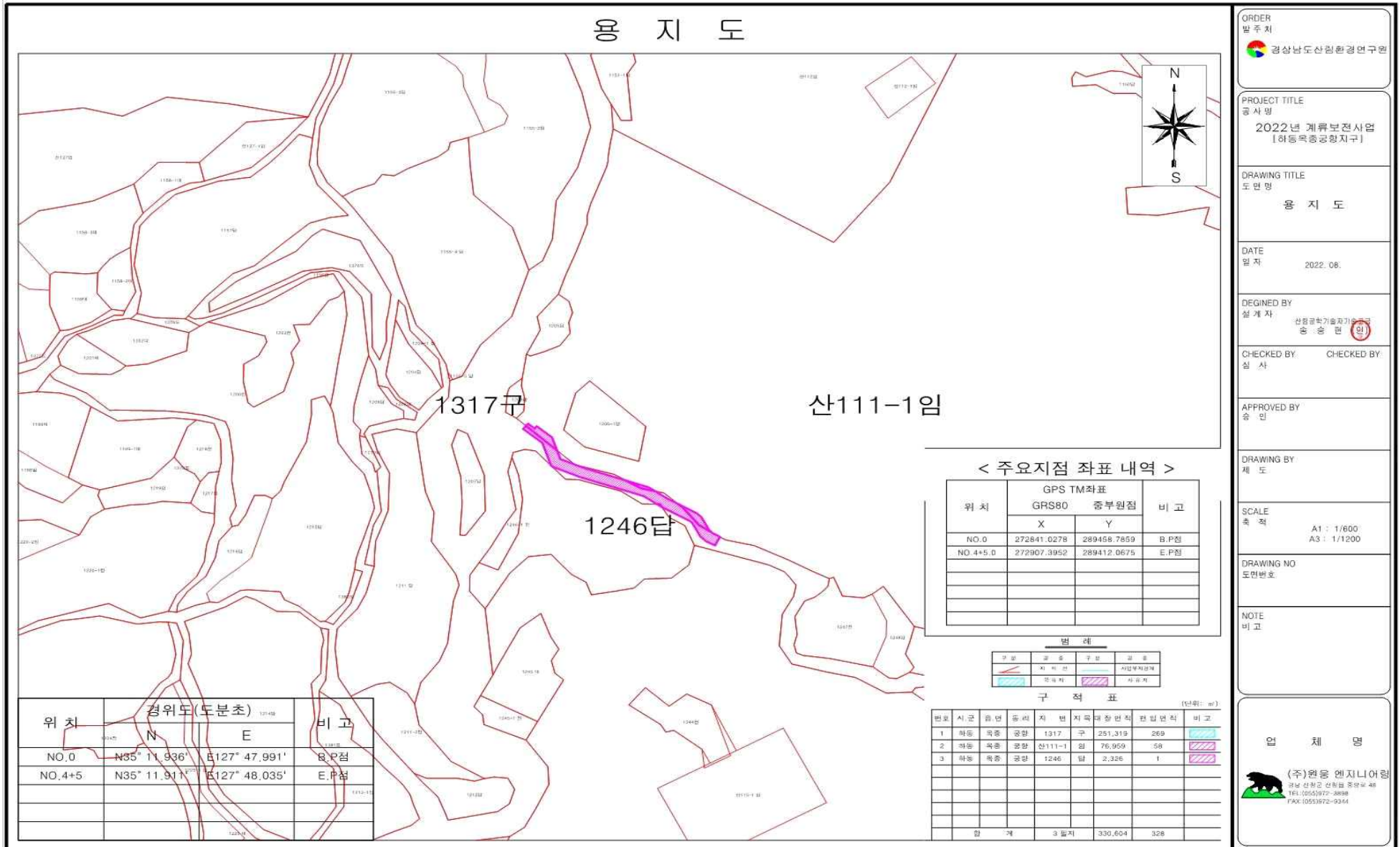
DRAWING NO
도면번호

NOTE
비 고

업 체 명

(주)원웅 엔지니어링
의성 산청군 안현면 중앙로 48
TEL : 055)972-3888
FAX : 055)972-9344

○ 용지도(2공구)



ORDER
발주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PROJECT TITLE
공사명
2022년 계류보전사업
[하동읍공항치구]

DRAWING TITLE
도면명
용 지도

DATE
일자
2022. 08.

DESIGNED BY
설계자
산림공학기술사(주)원웅
홍·송·린 (인)

CHECKED BY: CH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DRAWING BY:
세 도

SCALE
축 적
A1 : 1/600
A3 : 1/1200

DRAWING NO
도면번호

NOTE
비 고

업 체 명
(주)원웅 엔지니어링
경남 산청군 안학읍 중앙로 48
TEL: 055)972-8898
FAX: 055)972-9344

< 주요지점 좌표 내역 >

위치	GPS TM좌표		비고
	GRS80 X	중부원점 Y	
NO.0	272841.0278	289458.7859	B.P점
NO.4+5.0	272907.3952	289412.0675	E.P점

범례

구분	경로	구분	경로
지하천	시업지역계	사유지	

구 적 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1	하동	옥중	공항	1317 구	251,319	269		
2	하동	옥중	공항	산111-1	76,959	58		
3	하동	옥중	공항	1246	답	2,326	1	
합 계						330,604	328	

위치	경위도(도분초)		비고
	N	E	
NO.0	N85° 11.936'	E127° 47.991'	B.P점
NO.4+5	N35° 11.911'	E127° 48.035'	E.P점

하동군 고시 제2022 - 188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37-39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053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떡점길 36-17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79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37-39		20220930	20070618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073-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65-9		20220930	20070618	두전 서쪽에 있는 한옥정이라는 지명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산6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235-61		2022093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6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28		2022093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013-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179-57		2022093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01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179-55		2022093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35-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계산길 35-9		20220930	20070618	뒷산의 계명산아래 자리잡고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68-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08-12		2022093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68-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08-10		2022093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62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돌고지로 33		2022093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68-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08-11		2022093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 변경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05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053		20110729	2009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05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053-1		20220930	2009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 폐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36-17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20220930	2007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22-189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제3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결산총괄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1,067,181,258,342	1,066,203,427,236	831,003,095,274	235,200,331,962
일반회계	813,914,410,032	813,709,284,868	606,828,034,654	206,881,250,214
특별회계	253,266,848,310	252,494,142,368	224,175,060,620	28,319,081,748

1-1. 세입결산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1,067,181,258,342	1,069,795,899,198	1,066,203,427,236	363,959,080	3,228,512,882	99.9	99.7
일반회계	813,914,410,032	817,274,756,830	813,709,284,868	363,959,080	3,201,512,882	100.0	99.6
특별회계	253,266,848,310	252,521,142,368	252,494,142,368	-	27,000,000	99.7	100.0

1-2. 세출결산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1,067,181,258,342	831,003,095,274	197,145,891,932 (2,213,350,000)	39,032,271,136	77.9	18.5	3.7
일반회계	813,914,410,032	606,828,034,654	185,652,009,242 (1,775,350,000)	21,434,366,136	74.6	22.8	2.6
특별회계	253,266,848,310	224,175,060,620	11,493,882,690 (438,000,000)	17,597,905,000	88.5	4.5	6.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1-3. 결산상잉여금

(단위: 원)

회 계 별	합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35,200,331,962	141,101,995,735 (2,213,350,000)	37,729,298,437	16,101,247,760	9,409,310,351	30,858,479,679
일반회계	206,881,250,214	130,921,036,735 (1,775,350,000)	36,854,374,747	16,101,247,760	6,636,217,740	16,368,373,232
특별회계	28,319,081,748	10,180,959,000 (438,000,000)	874,923,690	-	2,773,092,611	14,490,106,447

2. 일반회계 결산

2-1. 세입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813,914,410,032	817,274,756,830	813,709,284,868	363,959,080	3,201,512,882	100.0	99.6
지	방 세 수입	27,126,562,000	29,571,373,050	27,834,060,570	190,375,950	1,546,936,530	102.6	94.1
	보 통 세	26,676,562,000	28,500,308,190	27,457,104,320	33,343,970	1,009,859,900	102.9	96.3
	지난년도 수입	450,000,000	1,071,064,860	376,956,250	157,031,980	537,076,630	83.8	35.2
세	외 수 입	53,452,137,000	57,448,616,365	55,620,456,883	173,583,130	1,654,576,352	104.1	96.8
	경상적세의 수입	6,576,747,000	6,666,920,211	6,467,206,089	-	199,714,122	98.3	97.0
	임시적세의 수입	46,335,479,000	49,827,027,084	48,443,814,494	172,187,020	1,211,025,570	104.6	97.2
	지방행제재 부과금	539,911,000	954,669,070	709,436,300	1,396,110	243,836,660	131.4	74.3
지	방 교 부 세	249,574,071,000	249,365,956,300	249,365,956,300	-	-	99.9	100.0
조	정 교 부 금 등	30,585,538,000	28,625,510,340	28,625,510,340	-	-	93.6	100.0
	자치구조정 교부금등	-	-	-	-	-	-	-
	시·군조정 교부금 등	30,585,538,000	28,625,510,340	28,625,510,340	-	-	93.6	100.0
보	조 금	315,498,046,000	312,044,898,050	312,044,898,050	-	-	98.9	100.0
	국 보조금등	253,816,969,000	250,459,265,000	250,459,265,000	-	-	98.7	100.0
	시·도비 보조금등	61,681,077,000	61,585,633,050	61,585,633,050	-	-	99.8	100.0
보	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7,678,056,032	140,218,402,725	140,218,402,725	-	-	101.8	100.0
	보전수입등	130,535,208,032	133,075,554,725	133,075,554,725	-	-	101.9	100.0
	내부거래	7,142,848,000	7,142,848,000	7,142,848,000	-	-	100.0	100.0

2-2. 세출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 행 잔 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813,914,410,032	606,828,034,654	185,652,009,242 (1,775,350,000)	21,434,366,136	74.6	22.8	2.6
일반공공행정	29,271,925,040	26,738,235,760	1,251,963,480	1,281,725,800	91.3	4.3	4.4
공공질서및안전	40,213,545,960	25,928,099,756	13,610,386,620	675,059,584	64.5	33.8	1.7
교 육	3,652,995,000	3,430,364,650	51,300,000	171,330,350	93.9	1.4	4.7
문화및관광	75,618,148,730	42,851,362,839	31,599,987,250	1,166,798,641	56.7	41.8	1.5
환 경	67,865,253,270	58,690,514,368	6,956,883,780	2,217,855,122	86.5	10.3	3.3
사회복지	109,626,123,700	105,598,778,623	1,019,417,800	3,007,927,277	96.3	0.9	2.7
보 건	13,126,011,100	11,417,233,780	414,700,000	1,294,077,320	87.0	3.2	9.9
농림해양수산	173,350,112,552	131,970,397,838	35,232,102,504 (1,775,350,000)	6,147,612,210	76.1	20.3	3.5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69,658,387,890	67,976,956,510	1,002,257,310	679,174,070	97.6	1.4	1.0
교통및물류	27,819,874,750	19,386,471,240	7,672,734,030	760,669,480	69.7	27.6	2.7
국토및지역개발	136,927,661,040	49,185,190,980	86,839,548,568	902,921,492	35.9	63.4	0.7
과학기술	114,292,000	81,513,690	-	32,778,310	71.3	0.0	28.7
예 비 비	1,910,506,000	-	-	1,910,506,000	0.0	0.0	100.0
기 타	64,759,573,000	63,572,914,620	727,900	1,185,930,480	98.2	0.0	1.8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3. 특별회계 결산

3-1. 세입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253,266,848,310	252,521,142,368	252,494,142,368	-	27,000,000	99.7	100.0
상수도 사 업	13,242,584,360	13,426,566,877	13,399,566,877	-	27,000,000	101.2	99.8
산업단지 조성	208,579,380,000	208,169,023,345	208,169,023,345	-	-	99.8	100.0
자활기금 운영	759,474,000	760,456,698	760,456,698	-	-	100.1	100.0
의료급여 기금조성	947,403,000	940,638,910	940,638,910	-	-	99.3	100.0
주민소득 지원자금	229,308,000	278,655,040	278,655,040	-	-	121.5	100.0
농공지구 조성사업	117,884,000	117,917,408	117,917,408	-	-	100.0	100.0
발 전 소 주변지역	7,349,399,000	7,229,941,118	7,229,941,118	-	-	98.4	100.0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631,721,000	630,948,646	630,948,646	-	-	99.9	100.0
농업재해 복구자금	2,172,000	2,187,905	2,187,905	-	-	100.7	100.0
수질개선 기금사업	21,407,522,950	20,964,806,421	20,964,806,421	-	-	97.9	100.0

3-2. 세출

(단위: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㉑	지 출 액 ㉒	다음연도 이 월 액 ㉓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㉔	비율(%)		
					㉒/㉑	㉓/㉑	㉔/㉑
합 계	253,266,848,310	224,175,060,620	11,493,882,690 (438,000,000)	17,597,905,000	88.5	4.5	6.9
상수도사업	13,242,584,360	11,505,331,710	782,777,300	954,475,350	86.9	5.9	7.2
산업단지조성	208,579,380,000	195,818,299,000	5,681,283,000 (438,000,000)	7,079,798,000	93.9	2.7	3.4
자활기금운영	759,474,000	31,136,000	-	728,338,000	4.1	0.0	95.9
의료급여기금조성	947,403,000	859,455,770	-	87,947,230	90.7	0.0	9.3
주민소득지원자금	229,308,000	47,406,000	-	181,902,000	20.7	0.0	79.3
농공지구조성사업	117,884,000	64,995,360	-	52,888,640	55.1	0.0	44.9
발전소주변지역	7,349,399,000	3,471,041,140	-	3,878,357,860	47.2	0.0	52.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631,721,000	553,294,320	-	78,426,680	87.6	0.0	12.4
농업재해복구자금	2,172,000	-	-	2,172,000	0.0	0.0	100.0
수질개선기금사업	21,407,522,950	11,824,101,320	5,029,822,390	4,553,599,240	55.2	23.5	21.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4.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964,929,645	3,220,538,988	7,090,478,180	3,869,939,192	6,185,468,633
재난관리기금	2,112,017,151	△563,965,342	1,036,786,420	1,600,751,762	1,548,051,809
식품진흥기금	66,471,501	△6,979,600	21,881,400	28,861,000	59,491,901
옥외광고정비기금	9,685,150	1,803,700	4,986,700	3,183,000	11,488,85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40,743,413	3,878,903,320	6,021,236,750	2,142,333,430	4,219,646,733
하동군체육기금	436,012,430	△89,223,090	5,586,910	94,810,000	346,789,340

5. 채권 결산

(단위: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2,946,716,699	674,094,470	726,877,770	2,893,933,399
일 반 회 계	1,944,811,532	6,883,260	356,696,720	1,594,998,072
특 별 회 계	1,001,905,167	667,211,210	370,181,050	1,298,935,327
주민소득지원자 금	468,022,170	77,457,460	106,022,300	439,457,330
발전소주변지역	533,882,997	589,753,750	264,158,750	859,477,997

6. 채무 결산

6-1. 채무

(단위: 원)

회 계 별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0,000,000,000	130,000,000,000	5,200,000,000	134,800,000,000
일 반 회 계	지방채무 (차입금)	8,000,000,000	0	3,200,000,000	4,800,000,000
특 별 회 계	지방채무 (차입금)	2,000,000,000	0	0	2,000,000,000
상수도사업	지방채무 (차입금)	2,000,000,000	0	2,000,000,000	-
산업단지조성	지방채무 (차입금)		130,000,000,000		130,000,000,000

6-2. 보증채무

(단위: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7. 공유재산 결산

(단위: 개, 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159,266	727,513,848,116	1,172	214,747,706,115	245	8,842,103,097	160,193
행정재산	158,187	715,412,747,568	1,146	213,062,348,925	234	8,197,767,150	159,099	920,277,329,343
일반재산	1,079	12,101,100,548	26	1,685,357,190	11	644,335,947	1,094	13,142,121,791

8. 물품 결산

(단위: 원)

구 분	정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657	632	6,875,071,913	38	208,218,231	13	95,901,160	657	6,987,388,984
업무용	657	632	6,875,071,913	38	208,218,231	13	95,901,160	657	6,987,388,984

9. 재무제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당해연도	2,369,353	152,895	2,216,458	531,273	665,726	△134,453
전 년 도	2,076,229	25,809	2,050,420	550,616	562,369	11,753
증 감	293,124	127,086	166,038	△31,096	115,110	△146,206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9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0. 13.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2-60~73호
2. 하천의 명칭 : 화개천
2. 허가연월일 : 2022.10.12.
3. 점용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수
4. 점용의 목적 : 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점용
5. 점용위치 : 화개면 삼신리 976, 128, 127, 116, 115, 972, 114, 973, 969, 1005, 98, 88-1, 967, 966번지
6. 점용면적 : 6,336㎡
7. 점용허가 기간 : 영구점용

하동군 고시 제2022 - 19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비길 161의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0.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98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비길 161		20221014	20090302	서촌에서 비파로 이어지는 길로 서비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246-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75-5		20221014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7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강선길 140-20		20221014	20070618	강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7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비길 137-22		20221014	20090302	서촌에서 비파로 이어지는 길로 서비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063-1, 1067-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68-33		20221014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0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988-9		20221014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7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66-10		20221014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20-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6-3		20221014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62-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129		20221014	20090302	해안을따라 지나는길이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450-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87-12		20221014	20070618	배가 달는 나무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22 - 1256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사항 정비 (안 제1조~제2조)
 -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사항 정비(안 제3조) 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055-880-2973, FAX 055-880-2019, ibche@korea.kr 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전대 또는 임대”를 “임대”로 한다.

제2조(「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5조(「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의 손·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6. (생략)	제6조(수탁자의 의무)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임대 ----- ----- ----- ----- 5.·6. (현행과 같음)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 ④ (생략) ⑤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한다.

<p>수 없다.</p> <p>⑥·⑦ (생략)</p> <p>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① (생략)</p> <p>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u></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p> <p>3. ~ 5. (생략)</p>	<p>제5조(이용의 금지)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 5. (현행과 같음)</p>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u>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u></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 <u>각종</u> ----- ----- -----</p>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의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군수가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u>고 인정하는 시책</p> <p>②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 「장애인 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동군 공고 제2022-1274호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 나.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 라. 부 칙 : 시행일(2023. 1. 1.) 이전 2022년 하반기 사전 절차 준비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행정국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292, FAX 880-227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관련 법령 2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2022-1274호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동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청년위원(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

하의 사람)

6.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 8. 하동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 10. 하동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 12. 하동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하동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 되는 유가증권
-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레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답레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 2. 답레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 능력
-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 5. 답레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하동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 · 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업무 담당 1명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해당업무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

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자
-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8489호,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라. 모금·접수 제한기간
 -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관보 또는 공보
 -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 다. 정보시스템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2904호,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2-1278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정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재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302, FAX : 055-880-2279

○ 이메일 : bogus9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부 칙

이 조례의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의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제10조의2-----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p> <p>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p>

하동군 공고 제2022 - 1283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범위마련 (조례안 제4조의2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하동군 문화환경국 시설체육과(전화 055-880-2063, FAX 055-880-2069, e-mail pinkmir76@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공과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체육진흥사업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군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p> <p>6. (생 략)</p> <p><신 설></p>	<p>제4조(체육진흥사업 지원)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6.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체육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p>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p> <p>2. 공과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p> <p>3. 사무시설 임차료</p> <p>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p> <p>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③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p>

하동군 공고 제 2022 - 1290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가. 결혼장려금, 주거비, 양육수당 등 확대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유도
 -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책임 강화
3. 주요 내용 : 관련 조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개정
 - 가. 출산축하용품 및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 출산축하용품 : (기존)30만원 → (변경)50만원
 - 영유아양육수당 : (기존)셋째아이 이상 → (변경)둘째아이 이상
 - 나.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 산후조리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지원

(다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지원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안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 ‘표준’ 금액

라. 결혼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3)

- (변경 전)500만원 → (변경 후)600만원

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4)

- (변경 전)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최대 1백만원 한도)
- (변경 후)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최대 3백만원 한도)

바.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 → 건강증진과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하동군(참조 : 지역활력추진단, 전화 055-880-2842, FAX 055-880-7159, e-mail : parkeejj@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참고자료(별표 1, 3, 4, 5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440만원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3.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1회에 한하여 다섯째아이 500만원 출생순위 증가에 따라 500만원 씩 추가 지급(단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6.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7. 태아염색체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8. 산후조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18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 다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지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18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별표 3]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별표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p>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p>	<p>가. 지원대상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 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p>나. 지원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연 1회 · 지원기간: 최장 3년

[별표 5]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축하용품	지역활력추진단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지역활력추진단	
	다둥이 안전보험	지역활력추진단	
	영유아 양육수당	지역활력추진단	
	임산부 철분제	건강증진과	
	태아 염색체 검사비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	건강증진과	
전입지원	전입자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학생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역활력추진단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과	
	전입자 팸투어	문화관광과	
	결혼식장 무료 대여	시설체육과	
	영농정착 보조금	지역활력추진단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역활력추진단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역활력추진단	

[참고자료 - 별표1, 3, 4, 5 개정 전후 비교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3조제2항 관련)	
2 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2 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5 영유아양육수당	(지원대상)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5 영유아양육수당	(지원대상)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신설)		8.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18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 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지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신설)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18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현 행			개정안		
[별표 3]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결혼장려금	(지원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지원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 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 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별표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u>1.5% 이내 이자</u>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연 1회 · 지원기간: 최장 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u>3% 이내 이자</u>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연 1회 · 지원기간: 최장 3년	
[별표 5]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제2항 관련)			[별표 5]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제2항 관련)		
구분	시 책 명	소관부서	구분	시 책 명	소관부서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축하용품	지역활력추진단		출산축하용품	지역활력추진단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지역활력추진단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지역활력추진단
	다둥이 안전보험	지역활력추진단		다둥이 안전보험	지역활력추진단
	영유아 양육수당	지역활력추진단		영유아 양육수당	지역활력추진단
	임산부 철분제	건강증진과		임산부 철분제	건강증진과
	태아 염색체 검사비	건강증진과		태아 염색체 검사비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	건강증진과	

하동군 공고 제2022-1180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 하동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하동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2. 9. 7.
 - 제공받는 자 : (주)코나오정보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22. 9. 7. ~ 2022. 9. 24. (17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2. 9. 7.

하 동 군 수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공고 제2022-20호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비대면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하동군수

1.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3. 지원내용 : 농산물 택배비 1건당 2,500원 정액 지원
 - 지원품목 : 관내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농산물
 -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
4.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50,000원 지원(최대 100건)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예산소진일까지(신청 전 가능여부 문의 필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문서 참조)
6. 읍·면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확정 후 청구서 제출
 - 월별(매월 20일) 추진상황 보고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및 농산물유통과 유통마케팅담당 문의(880-2865)

- 붙임 1.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끝.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 비대면(온라인) 거래량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산물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택배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유통 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12월
- 대상기간 : 2022. 9 ~ 11월 택배 발송 건
- 사업량 : 12,000건(붙임 1의 읍면별 배정량 참고)
- 사업비 : 30,000천원(군비)
- 사업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참여농가는 1농가로 간주
- 지원내용 : 농산물 택배비 1건당 2,500원 정액 지원
 - 지원품목 : 관내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농산물
 -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필한 제품에 한함
 -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50,000원 지원(최대 100건)
- 예산과목 :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육성, 로컬푸드 관리, 로컬푸드 운영지원, 일반보전금, 301-12(기타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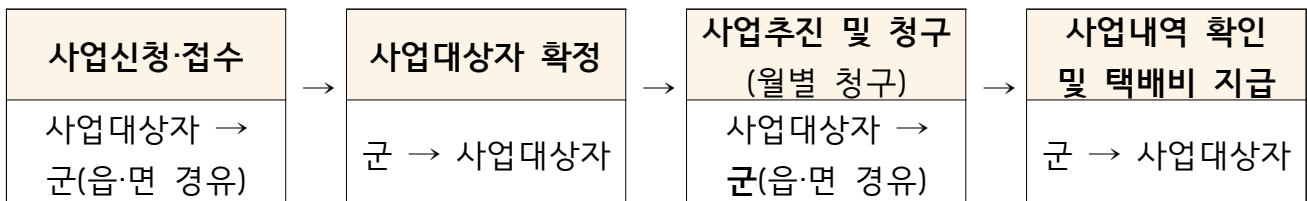
○ 지원제한(유의사항)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불가**
- 운송장번호와 발송·수신인 등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농가가 직접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한 경우
- 품목 및 배송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배 등(x), 배(o), 미나리(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 하동지역(관내)으로 배송하는 경우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선물용 등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발송한 경우 농가명(사업대상자)과 병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실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도·소매 등)에 판매·공급하는 경우
- 기타 유사사업 및 타 분야에서 지원하는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3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 흐름도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예산소진일까지(신청 전 가능여부 문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신청액 만큼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 확정

- 재배면적, 출하량, 참여농가수(단체) 등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 군 → 읍·면 → 사업대상자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액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① 청년농업인(만45세 이하) ② 여성농업인 ③ 고령농업인

○ 사업추진 및 청구

- 확정 대상자 택배비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읍·면 → 군)

- 월별 청구(3회)

- 9. 1. ~ 9. 30. 발송 택배: 10. 10. 한
- 10. 1. ~ 10. 31. 발송 택배: 11. 10. 한
- 11. 1. ~ 11. 30. 발송 택배: 12. 10. 한

※ 택배비청구는 사업 최종완료 후 1회(예: 9, 11월 택배 → 12월 청구)

- 이러한 경우, 택배업체 배송내역 보관기간 3개월이므로 사전에 배송확인서 발급 및 보관 필요(수기 작성 확인서는 불인정)

- 택배 배송확인서 발급 시 품목, 발송일, 발송인, 운송장번호, 금액, 배송량(건), 수신자 반드시 포함

○ 사업비 정산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제출
-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서식5]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보고

4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 통: [서식1]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서식2]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조직원 세부내역 •가공농산물: 식품제조가공허가서, 사업자등록증
택배비 지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3]택배비 청구서 •농산물 택배 발송 사진(건수별로 확인 가능해야함) •증빙서 : [서식4]택배발송대장(전산출력물) 혹은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내용: 택배발송인, 발송일자, 택배수신자, 상품명(품목), 배송수량, 운송장번호, 운임구분(선불여부), 택배금액 •사업대상자 통장사본(사업비 선납 증빙)

○ 지급방식 : 증빙자료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지급

- 청구시 익월 20일 지급

[참고1]

읍 면 별 배 정 량

	택배건수(건)	지원금액(원)
하동읍	924	2,310,000
화개면	923	2,307,500
악양면	923	2,307,500
적량면	923	2,307,500
횡천면	923	2,307,500
고전면	923	2,307,500
금남면	923	2,307,500
금성면	923	2,307,500
진교면	923	2,307,500
양보면	923	2,307,500
북천면	923	2,307,500
청암면	923	2,307,500
옥종면	923	2,307,500

※ 사업 신청 미달시 별도의 계획수정없이 다른 읍면으로 재배정 후 집행

<서식1>

(앞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업인·단체명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휴 대 폰	
	영농규모 및 판매현황 * 신청농업인 또는 단체의 전체현황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21 판매실적		주요품목		
		택배판매건수		
	주요판매처			
신청내용	택배건수	건		
	사 업 비	택배비 청구액	원	
		산출근거	건 ×	원 =
택배회사명				

본인은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조건에 위반될 경우 승인취소나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사업대장자(신청인) 주 소 : 하동군

성 명 : (인/서명)

하동군수 귀하

<서식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하동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하동군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하동군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하동군 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3>

택 배 비 청 구 서

택배비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 : 천원)

품 목	택배건수 (건)	사 업 비			택배비 청구액
		계	지 원 금	자 부 담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붙 임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택배비를 청구합니다.

2022. .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서식4>

택배발송대장(서식)

※ 아래의 내용은 필히 기재(전산작성)

연번	접수일자	송장번호	보내는분		받는분		상품명 (품목)	택배 요금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시	22.1.1.	12345678	홍길동 (정확히 기재)	하동군 시청로 00	김**	광주광역시 북구 (하동군 관내 제외)	사과(O) 사과 등(X) 농산물(X)	5,000	
1									
2									
3									
4									
5									
6									
7									
8									
9									
10									

확인자 택 배 사 :

확인자명 : (인)

<서식5>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정산결과(읍·면)

연번	신청인		생산자 단체명	택배 품목	택배발송 건 수	택배비 지급액	비고
	주 소	성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동군 공고 제2022 - 1224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양식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어 장 위 치	면 적 (ha)	면허기간	피면허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2건				8				
하동양식 제55호	패 류 양식업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5	2022.09.30 ~ 2023.09.29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5	대도어촌계 계장 이성봉	하동양식 제21호 재개발
하동양식 제56호	패 류 양식업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3	2022.09.30 ~ 2023.09.29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5	대도어촌계 계장 이성봉	하동양식 제22호 재개발

□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제2022 - 1267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의2에 따라 2022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제공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모집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2. 제공기관 설치기준

- 지정기관 : 하동군 관내어린이집 중 1개소
- 시간제보육 정원 : 3명(1개반 기준)
- 보육실 확보 : 시간제 보육실 13.2m² 이상(1개반당)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 보험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 제5항,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 가입 의무
- 평가 등 :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50%이상
- 비상재해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 소방설비 기준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2] 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3.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2. 10. 11. ~ 10. 25. 까지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등
 ※ 세부서류 - 붙임 신청서 참조
- 제출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업무담당자(880-2318)

4. 선정방법

- 제공기관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후 2차 최종 심사 및 선정

5. 지원기준

- 보육료 : 시간당 4,000(정부지원금 75%, 부모부담금 25%)
-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별도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등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70% 또는 100%) (국공립 등) 채용교사의 호봉별 단가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민간, 가정) 보육교사 4호봉 단가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 운영비 : 이용실적 및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 ※ 기타 세부사업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지침 'Ⅷ시간제 보육' 참조

붙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개요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원(명)	현원(명)

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비고
	명	명	

참여 기본요건	시간제보육실 확보 여부	시간제보육실 위치	시간제보육 반 수	시간제보육 정원	시간제보육실				
	(가, 부)	총	개	명	㎡				
	■ 평가인증 평가 유효기간 종료 (연월일) 평가인증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인증 <input type="checkbox"/>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								
	■ 평가 * 평가제 시행(19. 6월) 이후 적용기관 평가결과통보 (연월일) 평가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평가 <input type="checkbox"/> 정기평가 평가결과 (등급)								
	보육이동현황	지정신청서제출월 기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시설·보육교직원 현황, 보육철학, 보육계획안, 예산서, 서비스개시일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210mm × 297mm[백상지80g/㎡]

하동군 공고 제2022 - 1275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하동군수

1. 공 고 명: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12개소,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산144-1 등 15개 필지 【붙임1,2】
3.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2022.10. 6.(목) ~ 11. 7(월)[33일간]
5. 이의신청: 2022.10. 6.(목) ~ 11. 7(월)[33일간]
 - 가. 접 수 처: 하동군청 산림녹지과(☎055-880-2483)
 - 나. 신청양식: 이의신청서 【붙임3】
6. 지정 예정일: 2022. 11월 중
 -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 예정지 도면: 【붙임2】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해당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4】
9. 경과조치: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055-880-2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해당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 2021년 하동군(2차, 3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심의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 종류	소 유 자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총계					423,641	40,652						
	계					67,672	1,568						
하동군 (2차)	하동2차-0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산144-1	35,837	1,258	산사태	산지 사방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73,***	정*순	소규모 배수시설
	소계					35,837	1,258						
	하동2차-0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산15임	31,835	310	산사태	산지 사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52 ***	김*호	
	소계					31,835	310						
	계					355,969	39,084						
하동군 (3차)	하동3차-0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산8-1임	6,530	1,080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113,***	박*원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산8-6임	3,688	878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113,***	박*원	
	소계					10,218	1,958						
	하동3차-0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산99임	23,802	233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전주최씨모*과 *포	
	소계					23,802	233						
	하동3차-03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66-3임	76,690	10,523	산사태	산지 사방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새바지길***	이*한	
	소계					76,690	10,523						
	하동3차-0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산69임	4,585	1,069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신대길 ***	윤*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705-1과	10,808	1,04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신대길 ***	윤*근	
	소계						15,393	2,112					
	하동3차-0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558임	23,100	279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197 ***	밀양손씨오** 과중*희	
	소계						23,100	279					
	하동3차-0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6-5임	124,866	21,793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강*오 *닉	
	소계						124,866	21,793					
하동3차-0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산55임	23,326	219	토석류	계류 보전 사방 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20, ***	안*훈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산58-1임	11,070	97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	이*식		
소계						34,396	1,192						
하동3차-0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161임	32,727	545	토석류	계류 보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184,	박*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162임	13,785	350		사방 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6길 ***	강*호	
소계						46,512	895					
하동3차-0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213임	992	99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51, ***	김*수	
소계						992	99					
하동3차-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4임	20,587	662	산사태	산지 사방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	김*열	
소계						20,587	662					

하 동 군

- 12개소 -

하동2차-01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산144-1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성명
				북천면	사평리	산144-1	35,837	1,258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35,837	1,258		

하동2차-02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산15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양보면	감당리	산15임	31,835	310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31,835	310		

하동3차-01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산8-1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성명		
	금남면	진정리	산8-1임	6,530	1,080			
	금남면	진정리	산8-6임	3,688	878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10,218	1,958		

하동3차-03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66-3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북천면	화정리	산166-3 임	76,690	10,523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76,690	10,523		

하동3차-0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69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성명		
						악양면	미점리	산69임	4,585	1,069		
						악양면	미점리	705-1과	10,808	1,043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15,393	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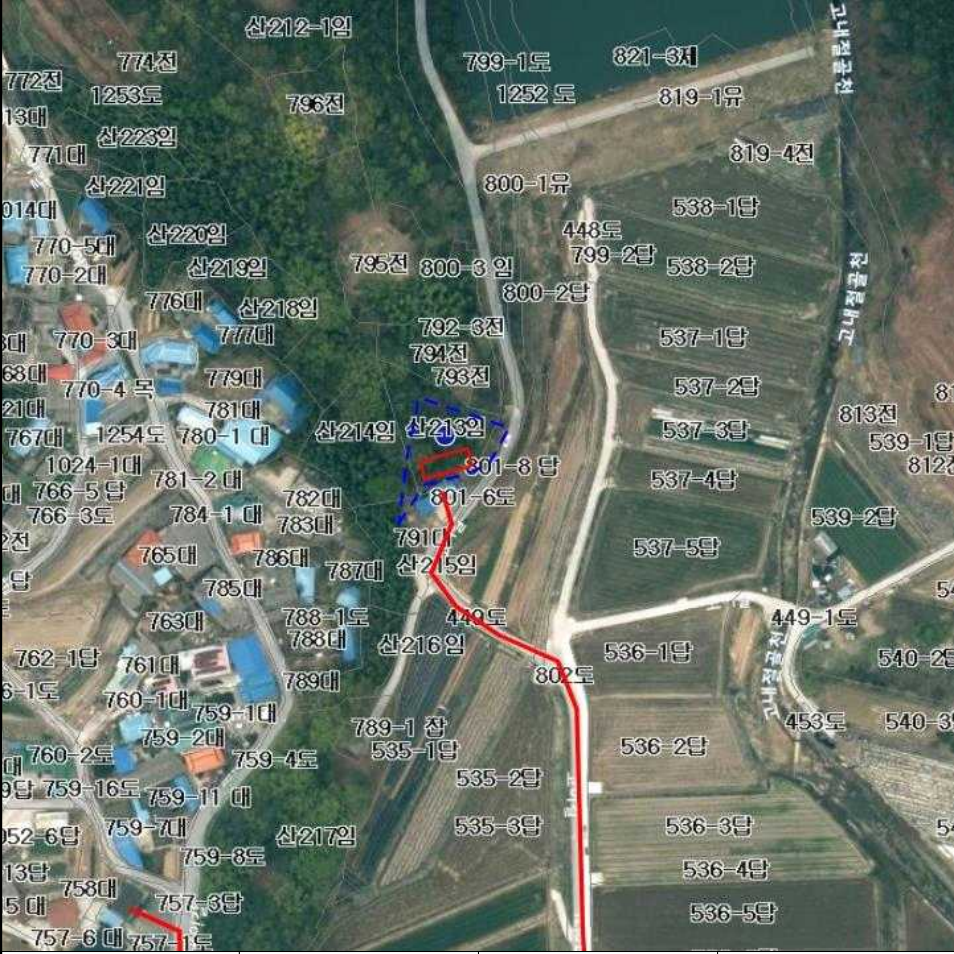
하동3차-06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6-5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성명		
				옥종면	회신리	산26-5임	124,866	21,793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124,866	21,793	

하동3차-07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산55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성명	
				진교면	고룡리	산55임	23,326	219			
				진교면	고룡리	산58-1임	11,070	973			
취약지역 유형	토석류	사업종류	계류보전+사방댐	소 계	34,396	1,192					

하동3차-09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213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진교면	고이리	산213임	992	99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992	99			

하동3차-1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4임

대상지 위치도				편입 필지 상세						
				토지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읍면동	리				주소	성명
				진교면	진교리	산4임	20,587	662		
취약지역 유형	산사태	사업종류	산지사방	소 계			20,587	66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²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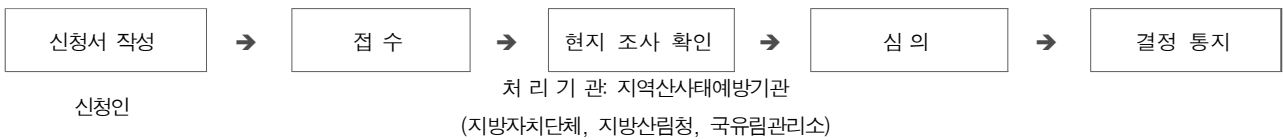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2-1334호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2. 10. 21. ~ 11. 6. (17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055-880-2564,6)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반송현황

순번	분기	납부자	차량 번호	송달주소	시군구	세부주소	반송구분
1	20222	(주)태*이엔씨	79버7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20길 *	반송함투여
2	20222	김*용	16서99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회목길 5*,	반송함투여
3	20222	강*연	25더63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길 6*	수취인부재
4	20222	정*식	경남80무17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40-2*	수취인부재
5	20222	백*성	97너4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27-8*	수취인불명
6	20222	고*희	97나19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동길 1*	수취인불명
7	20222	강*수	부산8구39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	수취인불명
8	20222	노*현	72나35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59-*	수취인불명
9	20222	노*현	84서68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59-*	수취인불명
10	20222	정*진	82버93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3-1*	수취인불명
11	20222	김*훈	84머27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동길 20-*	수취인불명
12	20222	최*욱	09저304*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우리길 33-*	수취인불명
13	20222	이*철	97나25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15-1*	수취인불명
14	20222	(주)풍*산업	경남71라25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20-*	수취인불명
15	20222	동남*와산업(주)	경남7도4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20-*	수취인불명
16	20222	김*훈	37머24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2*,	수취인불명
17	20222	김*주	84버56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5*	수취인불명
18	20222	강*호	95고2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168-1*	수취인불명
19	20222	이*철	84구9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3	수취인불명
20	20222	신*현	97버12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시목길 26-1*	수취인불명
21	20222	강*은	66가97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85-1*	수취인불명
22	20222	하*수	70가32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1*,	수취인불명
23	20222	문*희	14고08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1*,	수취인불명
24	20222	하*환	93가77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2*,	수취인불명
25	20222	이*엠(주)하동지점	96무70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36-1*	수취인불명
26	20222	노*원	부산30너95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계성길 22-*	수취인불명
27	20222	문*구	97다5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숭산동천길 46-*	수취인불명
28	20222	(주)강**어여행사	경남72바973*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5*	수취인불명
29	20222	양*호	46보3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2*	수취인불명
30	20222	DA**INMEHMET	50버79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23-*	수취인불명
31	20222	정*국	39고11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9*	수취인불명
32	20222	박*영	90로61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4*	수취인불명
33	20222	이*우	경남7모31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00	수취인불명
34	20222	주식회사**건설	86거79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	수취인불명
35	20222	주식회사**건설	97오17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	수취인불명
36	20222	세양**통신(주)	경남81무24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57-*	수취인불명
37	20222	김*환(삼*페인트)	경남81무61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2-1	수취인불명
38	20222	명*동	경남80루30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384	수취인불명
39	20222	김*성	92러41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192-*	수취인불명
40	20222	권*현	66수89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5	수취인불명
41	20222	공*현	경북35구54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0-1*	수취인불명

42	20222	주식회사**레일파크	81구689*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46-*	수취인불명
43	20222	엔지니어링**주	96로86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 10*	수취인불명
44	20222	반*안	경남47나2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	수취인불명
45	20222	임*길	경남7도86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	수취인불명
46	20222	황*이	경남70나13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6-*	수취인불명
47	20222	하*철	29주96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00*	수취인불명
48	20222	김*록	경남81무22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	수취인불명
49	20222	안*영	96주2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	수취인불명
50	20222	(주)**투어여행사	경남72바97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5*	수취인불명
51	20222	신설**주식회사	90어77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6*	이사감
52	20222	천*춘	39거84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구노랑길 59*	이사감
53	20222	서*한	경남7느13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	이사감
54	20222	(주)하동**관광	79버78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	이사감
55	20222	김*곤	경남1노16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90-1*	이사감
56	20222	합자회사**기업농업 회사	경남81무16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	이사감
57	20222	이*성	경남81무3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광평리 *	이사감
58	20222	오*운	17마97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나루터길 15-*	이사감
59	20222	조*균	81가74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3*	이사감
60	20222	최*기	79로13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254-*	이사감
61	20222	NGUY**VANTRONG	22무35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81-*	이사감
62	20222	(주)동*산업	경남8코28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	이사감
63	20222	서*명	경남5가8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소재1길 5-*	이사감
64	20222	서*명	경남7루60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소재1길 5-*	이사감
65	20222	권*자	96루64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	이사감
66	20222	WEERA***NMUDIYAN SELAGEJAYANTHA	15서31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42-2*	이사감
67	20222	이*수	26저67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3*	이사감
68	20222	(유)해*기업	경남71라15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이사감
69	20222	(주)*화토건	경남47가6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	이사감
70	20222	하*축산영농조합	경남81무15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	이사감
71	20222	이*성	경남81무1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광평리 *	이사감
72	20222	정*희	35우932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253-3*	이사감
73	20222	김*식	97머70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	이사감
74	20222	서*건설주식회사	85고92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2*	이사감
75	20222	이*영	경기7더91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황시골길 160-2*	이사감
76	20222	김*상	47거8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촌길 7*	이사감
77	20222	조*도	52저86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10*	이사감
78	20222	김*운	80노74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	이사감
79	20222	김*운	97거21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	이사감
80	20222	하*토건(주)	경남80루59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	이사감
81	20222	서*옥	94우33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2*	이사감
82	20222	김*복	70구73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소전방길 2*	이사감
83	20222	현*환경건설(주)	95부19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95-*	이사감
84	20222	박*선	94우752*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여의길 10*	이사감

85	20222	김*오	88서16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사기아름길 4*	이사감
86	20222	우*조경(주)	97나13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54-*	이사감
87	20222	(주)우*랜드산업	97나16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54-*	이사감
88	20222	주식회사우*랜드산업	97나18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54-*	이사감
89	20222	천*영농조합법인	97더65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04-*	이사감
90	20222	주식회사우*랜드산업	97버42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54-*	이사감
91	20222	성*철	92조11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길 22-*	이사감
92	20222	홍*표	95서44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하실로 813-4*	이사감
93	20222	현*환경건설(주)	84가64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95-2*	이사감
94	20222	황*곤	88거7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	이사감
95	20222	이*부	89어60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27-*	이사감
96	20222	한*호	81보42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1*	이사감
97	20222	(주)*정랜드산업	81더716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5*	이사감
98	20222	김*하	64소30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기길 9*	이사감
99	20222	송*준	87조36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	이사감
100	20222	전*상	04버11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1*	이사감
101	20222	(주)*진건설	86조86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1-*	이사감
102	20222	문*윤	94루6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1-*	이사감
103	20222	(주)*봉건설	96두86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68-*	이사감
104	20222	경남**버스협동조합	경남72바60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공설운동장로 *	이사감
105	20222	박*원	89어16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50-*	이사감
106	20222	김*면	85주91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	이사감
107	20222	김*민	85나65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2*,	이사감
108	20222	(주)신*중공업지점	86조87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금촌길 1-2*	이사감
109	20222	정*상	96무68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53-*	이사감
110	20222	정*상	89고2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53-*	이사감
111	20222	백*숙	81버51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253-3*	이사감
112	20222	김*식	84더88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	이사감
113	20222	(주)*림	79버78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	이사감
114	20222	광*플랜트주식회사	88로45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3*	이사감
115	20222	이*규	87다26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0*	이사감
116	20222	(주)*우	97거2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24*	이사감
117	20222	(주)*우	97거90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24*	이사감
118	20222	(주)*우	97나99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24*	이사감
119	20222	조*원	10무09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울원길 20-*	이사감
120	20222	우*통상(주)	경남99바91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이사감
121	20222	우*통상(주)	경남99바91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80-2*	이사감
122	20222	(주)*코 ?	81도44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86*	이사감
123	20222	강*정	40수95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정길 2*	이사감
124	20222	(주)*이랜드	경남47나28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20-*	이사감
125	20222	신*익	79고938*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7-17*	이사감
126	20222	이*부	경남81무6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27-2*	이사감
127	20222	(주)*람조경	경남81무28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	이사감
128	20222	하동**레저단지개발 주식회사	96구10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	이사감

129	20222	김*석	05무2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0*	이사감
130	20222	이*영	87머8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7*	이사감
131	20222	김*석	92서607*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 13-6*	이사감
132	20222	(주)농*샘물	경남71라164*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219-8*	이사감
133	20222	이*숙	98수87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4*	이사감
134	20222	한국**수협회 경남조경수유	97가36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67-2*	이사감
135	20222	심*호	97거5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3*	이사감
136	20222	(주)*이지개발	82버643*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40길 5*	주소불명
137	20222	정*도	30수128*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2*	수취인불명
137	2022	주*홍	40너90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13-*	반송함투여